
이슈브리프

2017. 8. 7

- I.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빈곤층에 부메랑 / 1
- II. 한미 FTA 재협상 : 쟁점과 시사점 / 8
- III. 좌파교육감이 견인하는 학교현장의 정치화 / 12
- IV. 문재인정부-촛불세력의 불편한 동거와 예견된 충돌 / 15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빈곤층에 부메랑

문재인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및 국가재정투입 추진은 경제적 논거가 미약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며, 저소득·빈곤층 근로자 및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우선적인 타격을 줄 것임. 객관적 시장 지표를 반영한 점진적 인상 및 차등화 된 최저임금 기준마련 필요

1.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요지

□ 문재인정부 첫 번째 최저임금 결정 및 3조원 재정투입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지 3.5개월 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7.15)



- 인상폭이 1,060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환산 월급 157만3,770원에 해당(주40시간·월209시간)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재정 투입 계획 발표(7.15)

- 5년간 평균인상률(연 7.4%) 차감분을 해당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조금으로 지급(2018년 기준 3조원)

2. 최저임금 급속 인상의 문제점

□ 경제적 논거가 미약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최저생계비 등 객관적 경제지표 무시 및 구체적 학술적 검토 부재

-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가이드라인이 최저임금 급속인상의 실질적 배경

※ “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부당 영향력 행사”(중기·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주장)

[표1]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도 최저임금(안) 추이

	최초요구안 (6.29)	1차 수정안 (7.12)	2차 수정안 (7.15)	최종 수정안 (7.15)
노동계 측	10,000원	9,570원	8,330원	7,530원 (표결확정)
사용자 측	6,625원	6,670원	6,740원	7,300원

○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분배 중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칠레의 아옌데 정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 등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

□ 국민소득 대비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절대 금액으로는 여러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들 중 5번째로 높은 수준(2017년 기준)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

※ 최저임금위 '2017 최저임금 주요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 참조

※ 2018년도 최저임금 단순대비 시 뉴질랜드, 프랑스에 이은 3위 수준이며, 2020년 1만원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OECD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치 가능성

○ 2017년 기준 절대액 기준으로는 OECD 34개국 중 15위 수준

- 독일 11.25유로(14,790원), 프랑스 9.67유로(12,700원), 영국 6.7파운드 (9,850원), 미국 7.25달러(8,290원), 일본 822엔(8,200원)의 순임

※ 최저임금 1만원 단순 대입시 OECD 국가들 중 9위 가능성

※ 프랑스, 영국 등은 상여금, 휴가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 계상된 액수여서 단순 비교는 무리

※ 미국의 경우 州별, 장애여부, 학생여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독일, 호주 등에서도 차등화 된 최저임금제가 시행 중임

□ 업계부담 증가, 특히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큰 타격

○ 올해 인상률(15.7%)을 적용하면 2019년 8,765원, 2020년 10,202원

- 최저임금 1만원은 환산월급 209만원에 해당

○ 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부담이 1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중기중앙회)

- 최저임금 대상 국내 근로자 462만 명 기준 추가 인건비가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최저임금 적용비율이 매우 높은 외국인 근로자 추가인건비 1.75조원 산정

• 최저임금 급격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될 것임

※ 2018년도 실효 최저임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인 이상 고용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까지 합산할 경우 9,036원이, 사회보험, 식비 등을 고려할 경우 1만원에 근접

○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인상률로 업계, 특히 외국인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

- 생산성 제고가 담보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쟁력 저하로 귀결

- 마진율이 낮은 영세 소기업·자영업자부터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감축, 폐업 불가피

□ 일자리확충 정책에 역행하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기회 감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폭탄

- 생존을 위해 기존 직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할 경우 서민 일자리의 대량 축소라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 초래

- 중장년층, 노년층, 청년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감소·소멸

○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집중적 감소 및 저소득·빈곤층 소득 감소 확인

- 미국 시애틀市에서 최저임금을 9달러(2014)→15달러(2017)로 인상한 결과 미숙련 일자리만 집중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6.6% 감소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워싱턴주립대 연구, 2017.6)

- 채용 축소 등에 따른 근로자의 실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결과

-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의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오히려 그들의 생계터전을 붕괴시키는 부메랑

※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률 1.1%p 감소 연구결과(노동연구원)를 바탕으로 할 때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13만9,000개 일자리 감소를 초래, 3년간이면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

□ 정부재정·국민 부담 가중

○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투입할 재정이

연간 3조원이라고 발표(7.15)

- 하지만, 실제 소요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5년간 총 30.7조원의 고용안정기금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조선비즈, 7.26)
 - 2018년 3조원, 2019년 6.3조원, 2020년 10.2조원으로 급증
 -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지급기간(~2022)까지 총 30.7조원 재정투입 불가피
- 이 외에도, 보육교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인상도 불가피하는 등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임

3. 검토의견 (당에 주는 시사점)

□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에 역행

-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저소득·빈곤층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 ‘시급 1만원’ 선거공약의 무리한 이행 추진은 우리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저소득·빈곤층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
 - 문재인 정부의 실험적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실행도구로 전략
-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최저생계비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되,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해갈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실현될 수 없는 포퓰리즘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 확충, 소비증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현실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에 큰 재앙이 될 우려
 - 민간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反시장적이며 지속적일 수 없음
- 12%대에 이르는 현재의 최저임금未지급률이 급증함으로써 제도의 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

□ 지역, 업종, 신분 등에 따른 차등화된 최저임금제도 지향할 필요

- 서울·수도권과 지방, 모든 업종에 단일화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며 비경제적
 - 2018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사용자측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역·업종별 차등화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
- ⇒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등과 같이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차별화된 기준 마련 검토 필요
- ⇒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작성: 이종인 연구위원 ☎ 02-3786-3811]

II. 한미 FTA 재협상 : 쟁점과 시사점

美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바, 협상에 대비 NAFTA 재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교훈과 시사점을 발견하고, 협상이 개시될 경우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바 국회에 재협상 대응팀 구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진행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시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장
- 산업자원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명의 서한 접수
 - 미국 측은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 검토를 개최 요청 사유로 제시함
- ※ 제22.2조 4에는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

2.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정부 입장

- 담당 부서인 산업자원부는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이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결정은 양 당사자 컨센서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이 미국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7: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對한국 무역적자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 시행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

3. 한미 FTA 발효 후 한미 양국의 경제적 효과

- 한미 FTA 이후 세계 교역이 12% 감소하였음에도 한미 교역은 12% 증가하였음
- 한국의 對美 투자는 FTA 발효이전 대비 2.6배 증가하였고 미국의 對韓 투자는 2.1배 증가함
 - 한국의 對美 투자
 - 2008년~2011년, 연평균 21.8억불
 - 2011년~2015년, 연평균 57.2억불
 - 미국의 對韓 투자
 - 2007년~2011년, 연평균 19억불
 - 2011년~2015년, 연평균 40.6억불

○ 한미 FTA 체결 이후 5년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함께 증가함

-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 2011년, 2.6% → 2016년, 3.2%

-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 2011년, 8.5% → 2016년, 10.6%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로 인해 2015년 미국의 對韓무역 적자가 157억불 감소(440억불→283억불)했다고 분석함(2016년 6월)

4. NAFTA(북미자유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재협상 진행 사항

○ 미국 무역대표부(USTR), 8월 16일 워싱턴에서 NAFTA 재협상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NAFTA는 최악의 무역협정” 이라고 비난하며,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는 약 630억달러에 달하고,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 미 정부, 7월 17일 NAFTA 재협상 로드맵 공개

- 환율조작금지,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22개의 협의 항목을 공표함

○ 주요 외신 반응

- CNN: 무역적자 삭감, 노동법 강화, 무역분쟁해결 메커니즘 폐지 등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환율조작금지는 캐나다·멕시코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큰 의미가 없음

- 로이터통신: 한국과 FTA 재협상 등 향후 진행될 통상협정 협상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美의회전문지 더 힐: 더 힐은 이례적으로 비보도 전제를 깨고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종의 잼을 던진 것으로 해석, 특히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

5. 정책적 시사점

- 개정협상이 개시될 경우 한국에게 유리한 협상의제를 포함시켜야 함
 - 멕시코는 NAFTA 개정 협상에 자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오히려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내비쳤으며 협상을 개시할 경우 반마약정책, 이민정책으로까지 협상의제를 오히려 확대
- 재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원칙을 준수해야함
- 국회 차원에서 FTA 재협상 대응팀을 구성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7월13일, 강효상 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참고)

[작성: 나경태 연구위원 02-3786-3852]